



제8절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1 총 칙

(1) 교육훈련규정의 목적 등

- ① 목적 : 이 영(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은 소방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의 교육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② 정의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제2조)
 - ㉠ “소방기관”이란 「소방공무원임용령」 제2조제3호의 소방기관을 말한다.
 - ㉡ “교육훈련기관”이란 「소방공무원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과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을 말한다.
 - ㉢ “직장훈련”이란 소방기관의 장이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일상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 “위탁교육훈련”이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국내외의 교육훈련기관이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8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 ③ 교육훈련의 기회 : 교육훈련의 기회는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 교육훈련 기관을 관장하는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교육과정별 우선 순위에 따라 소방기관별로 교육인원을 균등하게 배정해야 한다.(제4조)
- ④ 교육훈련의 성과측정 : 소방청장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내용·방법 및 성과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확인·평가하여 이를 개선·발전시켜야 하며, 확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제9조)

(2)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제3조)

- ① 설치 : 소방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발전과 관련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교육훈련정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 교육훈련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 ㉡ 장·단기 교육훈련 발전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 교육훈련 관련 시설·장비의 개선 및 예산확보에 관한 사항
 - ㉣ 소방학교의 교육훈련 과정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 교육훈련과정의 교과목 및 교재의 공동개발·활용에 관한 사항
 - ㉥ 교육훈련시설 및 교수요원 상호 활용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에 필요한 사항
- ② 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의 사람이 된다.
 - ㉠ 소방청 기획조정관, 소방청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소방청 소속 과장급 직위의 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 ㉠ 중앙소방학교의 장, 각 지방소방학교의 장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소방본부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담당 과장급 공무원
- ③ 자문단 구성·운영 : 위원장은 전문적·기술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④ 해산 : 소방청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운영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3)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 등(제5조, 제6조)

- ① 교육훈련의 구분 :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기본교육훈련·전문교육훈련·기타교육훈련 및 자기개발 학습으로 구분한다.
- ② 교육훈련의 방법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및 위탁교육훈련의 방법으로 한다.
- ③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에 관한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④ 시설 활용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국가기관, 공공단체 또는 민간기관의 교육과정이나 원격강의시스템 등 교육훈련용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 ⑤ 자기개발 학습의 지원 등 :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자기개발 학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6조)

[교육훈련의 구분·대상·방법(제5조제3항 관련 별표 1)]

구분		대상	방법
1. 기본교육훈련	가. 신입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 임용이 예정된 사람 • 법 제10조에 따라 시보 임용된 사람으로서 시보 임용 전에 신입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 실시
	나. 관리역량교육	승진후보자(「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제26조 또는 제37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또는 승진임용된 사람이 받는 교육훈련	
	다. 소방정책관리자교육	소방위 계급(소방위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포함)	
	소방경 계급(소방경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포함) 소방령 계급(소방령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포함) 소방정 계급(소방정 계급으로의 승진후보자 포함)		
2. 전문교육훈련		소방령 이하	직장훈련으로 실시. 다만, 직장훈련으로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



			육으로 실시하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으로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탁교육훈련으로 실시
3. 기타교육훈련	제1호 및 제2호에 속하지 않는 교육훈련으로서 소속 소방기관의 장의 명에 따른 교육훈련	모든 계급	직장훈련으로 실시
4. 자기개발 학습	소방공무원이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과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추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학습·연구활동	모든 계급	

비고 : 해당 계급에 임용되기 직전 또는 해당 계급에서 신입교육을 받은 사람은 해당 계급의 관리역량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교육훈련계획(제7조) * 19년 소방위

- ①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 통보 : 소방청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소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과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교육훈련의 목표
 - ㉡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 직장훈련, 위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 기본교육훈련, 전문교육훈련, 기타교육훈련, 자기개발 학습에 관한 사항
 - ㉣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 ② 시·도 교육훈련계획 :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차년도 교육훈련계획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③ 교육훈련계획의 통보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의 준비 및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을 위하여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소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5) 교육훈련기관 간 협업·개방(제8조)

- ① 상호 협업 요청 : 소방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제고하고,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업·개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시·도지사와 먼저 협의해야 한다.
 - ㉠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을 전체 소방공무원에게 개방
 - ㉡ 교육훈련기관별로 특성화된 전문교육훈련과정 지정

- ㉔ 교과목, 교재, 교육훈련용 콘텐츠 등 교육훈련과정의 공동 개발·활용
 - ㉕ 교수요원, 교육훈련 시설 및 기자재 등의 상호 활용
 - ㉖ 각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과정 및 교육훈련용 시설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 개방
 - ㉗ 그 밖에 각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사항의 상호 지원
- ② 요청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6) 교육훈련비의 지급 및 복무의무 등(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 * 15년 서울 소방교

- ① 교육훈련비의 지급 : 소방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금·등록금 및 그 밖에 교육훈련에 드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0조)
- ② 신입교육 이수자의 복무의무 :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신입교육을 받고 임용된 사람은 그 교육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소방공무원으로 복무해야 한다.
- ③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6개월 이상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6년의 범위에서 교육훈련기간과 같은 기간(국외 위탁교육훈련의 경우에는 교육훈련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동안 교육훈련 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서 복무하게 해야 한다.
- ④ 의무위반등에 대한 경비의 반납조치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신입교육 또는 위탁교육훈련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 교육훈련에 든 경비(보수는 제외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㉑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훈련에서 탈락된 경우
 - ㉒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㉓ 제41조에 따른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

반납액의 산정기준표(제12조 관련 별표 2)

구분	산정기준
1.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frac{1}{2}$
2. 제1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3.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요경비 전액

※ 비교

- 1. 의무복무 개월수 및 근무 개월수를 계산할 때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한다.
- 2. 국외훈련을 위하여 지급받은 외화표시 소요경비는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현찰매도 환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3.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추가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추가반납액} = \text{소요경비} \times \frac{1}{2} \times \frac{(\text{의무복무 개월수} - \text{근무 개월수})}{\text{의무복무 개월수}}$$



2 교육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1)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제13조) * 22년 소방위, 21년 소방교, 20년 소방위

교육훈련기관별 교육훈련과정과 과정별 대상·기간·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제14조)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①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 ② 교육훈련과정
- ③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교수요목(教授要目)·기간·대상 및 인원
- ④ 교육훈련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대상자의 선발계획
- ⑤ 교재 편찬계획
- ⑥ 교육훈련성적의 평가방법
- ⑦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제15조)

- ① 대상자 선발 : 소방기관의 장이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이하 “소방기관장등”이라 한다)는 제14조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신규채용일 또는 승진임용일, 계급, 담당업무, 경력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한 사람을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해야 한다.
- ② 교육훈련대상자 선발은 그로 인한 업무의 정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 ③ 대상자 명단의 통보 : 소방기관장등은 교육훈련 개시 10일 전까지 교육훈련대상자의 명단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대상자 교체의 요청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육훈련대상자가 교육훈련과정별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기관장등에게 교육훈련대상자를 교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소방기관장등은 지체 없이 교육훈련대상자를 다시 선발하여 통보해야 한다.
- ④ 교육훈련의 등록 : 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소방공무원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교육훈련 기간 중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교육훈련성적의 평가(제16조)

- ① 공정한 평가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성적을 평가해야 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교육훈련대상자에게 과제를 부여하고 그 결과를 교육훈련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② 교육훈련성적의 통보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의 교육훈련성적을 교육훈련 수료 또는 졸업 후 10일 이내에 그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5) 수료 및 졸업(제17조)

- ① 수료 요건 : 각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의 성적을 받으면 수료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다만,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성적 평가를 생략하고 교육훈련대상자의 교육훈련 참여도 등을 기준으로 수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졸업 요건 : 신입교육의 교육훈련과정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졸업사정 절차를 통과하면 졸업요건을 갖춘 것으로 한다.
 - ㉠ 전체 교육훈련성적이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일 것
 - ㉡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각 과목의 교육훈련성적이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인 사람일 것
- ③ 졸업 사정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졸업사정을 실시할 때 교육훈련대상자의 생활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졸업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하며, 졸업사정 결과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졸업시키지 않을 수 있다.
- ④ 세부적인 수료 기준 등 : 위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료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과정별 수강시간, 졸업사정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정한다.

(6) 퇴교처분(제18조)

- ① 퇴교처분의 사유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고, 퇴교처분을 하는 경우 해당 교육훈련대상자의 소속 소방기관장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 21년 소방교
 -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 ㉢ 수업을 매우 게을리한 경우
 - ㉣ 생활기록이 매우 불량한 경우
 - ㉤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 ㉥ 교육훈련기관의 장의 교육훈련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우
 - ㉦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대상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 ② 징계의결의 요구 등 : 소방기관의 장은 위①의 ㉠부터 ㉥까지의 사유로 퇴교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5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소방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7) 수료 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한 조치(제19조)

- ① 1회 재교육 : 소방기관장등은 제17조에 따른 수료 또는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직권면직의 동의요구 등 : 소방기관의 장은 다시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이 거듭 수료 또는 졸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서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의 신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소방기관의 장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8) 교수요원의 운영 등(제20조 내지 제25조) * 18년 소방교

- ① 교수요원 : 교육훈련기관에는 다음의 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둔다.
 - ㉠ 강의 또는 훈련
 - ㉡ 교과연구 및 교재집필
 - ㉢ 교육훈련과정의 설계·운영 및 교육훈련성적 평가
 - ㉣ 교육훈련대상자에 대한 상담·지도
- ② 교수요원의 구분 및 임명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을 강의교수, 훈련교수, 교육운영교수, 생활지도교수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교수요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③ 명예교수, 객원교수 위촉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중에서 재직 중의 업적이 현저하고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위촉할 수 있으며, 특정 분야 또는 교과목의 강의나 훈련 분임지도 등 교육훈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객원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겸직임용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11조제1항 또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미리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겸임하는 교수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자격기준 : 교수요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 ㉣ 담당할 분야에 관련된 6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 ㉤ 담당할 분야와 관련하여 「고등교육법」 제16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자격을 갖춘 사람
 - ㉥ 그 밖에 담당할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 ⑥ 결격사유 : 징계처분 기간 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 직위해제 처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 ⑦ 교수요원의 역량강화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에게 강의, 훈련, 교육운영 등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훈련과정을 주기적으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
- ⑧ 교수요원의 역량평가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수요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강의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해 교수요원의 체계적 관리·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수요원의 교수역량을 평가하여 근무성적 평정, 교육훈련 선발, 연구비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⑨ 교수요원의 전보 : 복무기간이 만료된 교수요원을 전보할 때는 본인의 희망을 고려해야 한다.

(9) 교육훈련시설(제26조) * 20년 소방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이 교육훈련을 통하여 직무역량 및 현장대응능력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기관에 별표 3에 따른 다음 교육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구분	교육훈련시설
1. 옥내 훈련시설	가. 전문구급 훈련장
	나. 수난구조 훈련장
	다. 화재조사 훈련장
	라. 소방시설 실습장
	마. 가상현실 훈련장
2. 옥외 훈련시설	가. 소방종합 훈련탑
	나. 산악구조 훈련장
	다. 소방차량 및 장비조작 훈련장
	라. 실물화재 훈련장
3. 교육지원시설	가. 업무시설
	나. 강의시설
	다. 관리시설
	라. 편의시설
	마. 주거시설
	바. 저장시설

1. 교육훈련시설의 종류별 면적기준, 시설기준 및 보유장비기준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교육훈련기관이 다른 기관과 업무협약 등을 통해 비교의 제1호에 따른 면적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춘 훈련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교육훈련시설별 보유장비기준은 각 교육훈련기관이 모두 갖추어야 한다.

(10)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① 학칙(제27조) :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칙 등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 및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 ㉠ 입교·퇴교·상벌에 관한 사항
- ㉡ 교육훈련성적 평가 및 수료·졸업에 관한 세부 사항
- ㉢ 수업시간 및 휴무일에 관한 사항
- ㉣ 제28조에 따른 생활관 입실 및 생활에 관한 사항



- ㉔ 수탁교육생에 관한 사항
 - ㉕ 교육훈련대상자의 표지(標識)에 관한 사항
 - ㉖ 교수요원 등의 선발·위촉·관리에 관한 사항
 - ㉗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생활관 입실(제28조) :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소방공무원과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훈련기간 동안 생활관에 입실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 달성을 위해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활관에 입실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급여품 및 대여품의 지급(제29조) :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사람으로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공무원에 준하는 급여품 및 대여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직장훈련

(1) 직장훈련의 실시(제30조)

- ① 직장훈련 : 소방기관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이 새로운 전문지식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기술 및 정보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로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개인별 지도관 임명 : 소방기관의 장은 시보임용 중인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개인별 지도관을 임명하여 해당 기관의 조직과 임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③ 체력훈련 : 소방기관의 장은 소방공무원이 재난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속 소방공무원에게 직장 내 체계적인 체력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④ 직장훈련 시간 총량 관리(제31조) : 소방기관의 장은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직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를 정하고 개인별로 관리해야 한다.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의 설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2) 직장훈련계획(제32조)

소방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정책 및 기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22년 소방교

- ① 공직가치 확립 및 정부 시책(施策)에 대한 교육
- ② 팀 단위 소방전술훈련 및 개인 직무 전문기술훈련
- ③ 신규채용자 및 보직변경자에 대한 실무적응교육훈련
- ④ 체력향상을 위한 훈련
- ⑤ 개인별 직장훈련 시간 총량 목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⑥ 그 밖에 부서별·직무분야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훈련

(3) 직장훈련담당관(제33조 및 제34조)

- ① 직장훈련담당관 : 소방공무원의 직장훈련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기관에 직장훈련담당관을 둔다. 직장훈련담당관은 해당 소방기관의 장이 지정한다.
- ② 직장훈련담당관의 직무 : 해당 소방기관의 장의 지휘·감독하에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 ㉠ 직장훈련의 계획수립과 심사 및 지도·감독
 - ㉡ 직장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확인
 - ㉢ 직장훈련 실시를 위한 시설·교재 등의 준비
 - ㉣ 기타 직장훈련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직장훈련의 성과측정(제35조)

- ① 인사관리에 반영 : 소방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소속 공무원들의 직장훈련 성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반영해야 한다.
- ② 직장훈련 성과의 평가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4 위탁교육훈련**(1) 위탁교육훈련의 실시(제36조)**

- ① 위탁교육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육훈련대상자가 소속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행정기관이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② 수탁교육 :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시·도지사가 요청할 때에는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탁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 간의 위탁 교육 : 소방청장은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주어지도록 교육훈련기관을 관장하는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하여 시·도 간에 상호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파견 요청 등 : 수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그 위탁을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교수요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2) 위탁교육훈련계획(제37조)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의 경우는 제외한다

- ① 훈련의 목적 및 내용
- ② 훈련의 기관 및 기간



- ③ 훈련의 종류별 분야별 인원
- ④ 훈련대상자의 자격요건, 선발방법 및 절차
- ⑤ 훈련대상자 및 훈련 이후의 보직계획
- ⑥ 훈련비의 명세 및 그 부담에 관한 사항
- ⑦ 복무의무에 관한 사항
- ⑧ 그 밖에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선발(제38조)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를 선발하는 경우 다음의 요건을 고려하여 선발해야 한다.

- ① 국가관과 직무에 대한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
- ②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
- ③ 필요한 학력·경력을 갖춘 사람
- ④ 훈련 이수 후 훈련과 관련된 직무 분야에 상당 기간 근무가 가능한 사람
- ⑤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필요한 외국어 능력을 갖춘 사람
- ⑥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3)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 ① 훈련과제의 부여 :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 대상자(6개월 미만의 국내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업무와 관련되는 훈련과제를 부여해야 하며, 과제 연구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한다.
- ②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 소방기관의 장은 위탁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탁교육훈련 대상자의 훈련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파악하여 훈련 및 복무에 필요한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
- ③ 지시 사항 이행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고, 훈련기간 중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교육훈련기관의 학칙 준수 등 훈련대상자로서의 의무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훈련 이수 후에는 지체 없이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
- ④ 보고 : 위탁교육훈련 대상자는 훈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훈련의 기관 또는 기간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
 - ㉡ 훈련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질병·사고 등 신상의 변화가 생긴 경우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교육훈련비 외의 장학금·기부금 또는 찬조금 등을 받으려는 경우
- ⑥ 귀국 후 사직원 제출 :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귀국한 후에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⑦ 복귀명령(제41조) :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복귀를 명하고 그 사실을 수탁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 제40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를 위반하여 훈련 목적을 현저히 벗어난 경우
- ㉡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훈련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탁교육훈련과 교육훈련기관 교육과의 관계(제42조)

- ①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해당 분야와 관련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성적을 확인해야 한다.
- ② 위탁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포상 또는 퇴교처분으로 본다.

(5) 위탁교육훈련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제43조)

- ① 국외에서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귀국보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보고서를 교육훈련기관에 배포하여 교육훈련의 자료로 활용하게 해야 한다.

(6) 준용(제44조)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을 준용한다.